

## 평생교육원 규정

‘과’를 ‘팀’으로 2009.09.01 일괄 개정, 개정2009.11.13,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일괄개정2010.08.10, 개정 2012.03.16, 개정 2019.10.25. 개정 2022.04.28

###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본원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본교 건학정신을 바탕으로 선도적으로 생애주기 교육과 수요 맞춤형 교육을 담당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2.04.28. 개정>

제 2 조(명칭) 본원은 대진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이하 “본원”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 3 조(소재) ① 본원은 대진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내에 둔다. 다만, 필요에 따라 교외에 분원을 설치할 수 있다. <2022.04.28. 항 번호 신설, 개정>

② 본원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를 본원의 원장으로 보할 수 있으며 원장의 제청에 의해 총장이 위촉한다. <2022.04.28. 항 신설>

제 4 조(사업) 본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2. 학점은행제 운영 및 관리
3. 민간자격제 운영 및 관리
4. 평생학습에 관한 연구 및 조사
5. 국내외 각종 평생학습 기관과의 교류 협력
6. 외부기관의 위·수탁사업 <2022.04.28. 호 신설>
7. 기타 본원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2022.04.28. 호 번호 조정>

### 제 2 장 조 직

제 5 조(조직) 본원에는 평생교학팀(이하 “교학팀”이라 한다.), 다문화교육센터를 둔다. <2010.08.10 개정>

제 6 조(구성) ① 본원에는 원장을 두며, 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제 7 조(임무) ①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통제하고 소속 교직원들을 지휘 감독한다.

② 교학팀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교학업무를 관장하고, 센터장은 다문화교육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업무를 관장한다.<2010.08.10 개정> <2012.03.16 개정>

제 8 조(직원) ① 교학팀과 센터에는 팀장과 필요한 직원 및 조교를 둘 수 있으며, 그 정원

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009.9.1개정> <2010.08.10 개정> <2012.03.16 개정>

② 교학팀 팀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고, 센터장은 전임교원 또는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2009. 11. 13 개정> <2010.08.10 개정> <2012.03.16 개정>

제 9 조(교원의 구분 및 자격과 위촉) 본원 소속교원은 초빙교원과 시간강사로 구분한다.

① 초빙교원은 해당 분야 전공자로서 본교 전임교원 혹은 그와 동등한 자격을 소지한 자를 원칙으로 하고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2019.10.25. 개정> <2022.04.28. 개정>

② 초빙교원의 명칭은 그 경력에 따라 특임교수, 전문교수로 구분한다. 그 기준은 <별표1>과 같다. <2022.04.28. 항 추가>

③ 시간강사는 해당분야 석사학위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역량을 소지한 자로 하고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2019.10.25. 개정> <2022.04.28. 항 번호 조정, 개정>

④ 학점은행제 초빙교원 및 시간강사의 자격기준을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제3조 ⑤항에 의거하여 학점은행제 운영 내규로 따로 정한다. <2022.04.28. 항 추가>

⑤ 초빙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고, 시간강사의 임용기간은 강좌단위를 원칙으로 한다. <2022.04.28. 항 번호 조정, 개정>

⑥ 본원의 교원에 대한 보수는 원장의 의견을 들어 기획처를 경유하여 총장이 따로 정한다. <2022.04.28. 항 번호 조정, 개정>

제10조(사업보고) <삭제>

###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11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본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원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제12조(임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사업계획에 따른 계획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 및 교과목에 관한 사항
4. 수강인원 및 수강료에 관한 사항
5. 규정의 개정 및 폐기에 관한 사항
6. 기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제14조(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제 4 장 학 사

제15조(학사)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은 따로 정한다.

## 제 5 장 시설 및 장비운영

제16조(시설 및 장비) 본원의 시설, 장비 및 각종자료의 활용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 제 6 장 재정 및 회계

제17조(재정) 본원의 운영경비는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수강료(입학금 포함)
2. 본 대학교 보조금
3. 위탁훈련 지원금(위탁훈련시)
4. 기타 수입

제18조(감사) 본원의 감사는 본교 감사규정에 따른다.

제19조(회계) 본원의 회계는 학교비회계로 하고 본교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0조(재산귀속) 본원이 해산될 경우 그 재산은 본교에 귀속된다.

제21조(세부사항) 본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 내규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인 어학교육) 삭제

### 부 칙

1. (시행일) 본 개정규정은 199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199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 규정은 2001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법인사무국-218)

부 칙

1. 이 규정은 2009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법인사무국-334)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법인사무국-244)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법인사무국-21)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 규정은 2019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법인사무국-277)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 규정은 2022년 04월 28일부터 시행한다.(법인사무국-83)

<별표1> 특임교수, 전문교수 자격 기준 <2022.04.28. 신설>

구분	자격 기준
특임교수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역량을 소지하고 10년 이상의 이론 및 실기에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저명인사
전문교수	해당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역량을 소지하고 5년 이상의 이론 및 실기에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인사